

「서울특별시 송파구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,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「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 규칙」 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26년 3월 30일

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의장

## 서울특별시 송파구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### 1. 개정이유

기계환기설비 중 공기가 통하는 관(덕트)의 주기적인 세척 및 관리 기준을 마련하여, 실내공기 오염물질을 제거함으로써 환기설비 유지 관리의 효율성 제고 및 실내공기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.

### 2. 주요내용

환기시설의 기준에 대한 문구를 명확히 하고 기계환기설비 중 공기가 통하는 관의 세척 등 관리규정 마련.(안 제8조제2항 및 제3항)

### 3. 입법예고기간: 2026. 3. 30. ~ 2026. 4. 6. (8일간)

#### 4. 의견제출

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장 (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242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

- 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(찬·반 여부 및 그 사유)
- 나. 성명 (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- 다. 기타 참고사항 등

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송파구의회사무국 의사팀 (전화: 2147-3662, FAX: 2147-3956, e-mail: khjjj@songpa.go.kr)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※ 의견은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제출 가능하며, 조례안의 자세한 내용은 송파구 홈페이지 ([www.songpa.go.kr](http://www.songpa.go.kr))와 송파구의회 홈페이지 ([www.council.songpa.go.kr](http://www.council.songpa.go.kr))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